

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법」 제77조(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)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(과태료)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, 이사감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의 방법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4. 4. 30.

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



1. 제 목 : 도로법(운행제한)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처분근거 :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
3. 공고기간 : 2024. 4. 30. ~ 2024. 5. 14.(15일간)
4. 공고내역 : 붙임 내역서 참조
5. 공고내용
 - 가.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(062-970-6367)로 연락하여 20% 감경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며, 20%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.
 - 다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~3급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4에 따른 1~3급 상이등급 판정자, 미성년자)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문의 062-970-6367)
 - 라.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6.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
 - 인터넷 공고 :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(<http://www.roadfine.go.kr>)
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
 - 문의전화 : 감경, 의견제출, 단속문의(시설안전관리과, 062-970-6367, 6361)
고지서 발급, 납부관련, 가상계좌 문의(운영지원과 062-970-6321)
 - 주소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-16 (우편번호62278)